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농수산물시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2008. 10. 27

**행 정 건 설 위 원 회
전문위원 신 승 관**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농수산물시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제안경위

- 가. 제 안 자 : 마포구청장
- 나. 제 출 일 : 2008. 10. 10
- 다. 위원회회부 : 2008. 10. 13
- 라. 위원회 회부근거 : 마포구의회 회의규칙 제19조 제1항

2. 제정이유

마포농수산물시장을 운영함에 있어 특정한 세입을 특정한 세출에 충당함으로써 회계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시장의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특별회계를 설치 운영

3. 주요내용

- 가. 조례의 적용범위 기준을 규정 (안 제2조)
- 나. 세입(수입)의 범위를 규정 (안 제4조)
- 다. 세출(지출)의 범위를 규정 (안 제5조)
- 라. 잉여금의 처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 (안 제7조)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재정법 제9조

제9조 (회계의 구분)

- ① 지방자치단체의 회계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한다.
- ② 특별회계는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방직영기업 그 밖의 특정사업을 운영할 때 또는 특정자금이나 특정세입·세출로서 일반세입·세출과 구분하여 계리할 필요가 있을 때에 한하여 법률 또는 조례로 설치할 수 있다.

○ 서울특별시 마포구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7조

제27조(사업) 공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행한다.

- 1.~ 4. (생략)
- 5. 마포농수산물시장 관리 운영 사업
- 6.~ 8. (생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기 타

- 1) 제정문안 : 불임
- 2) 입법예고 : 입법예고(2008.09.11 ~ 10.01) 결과, 의견제출 없음

5. 검토결과

○ 제출경위

본 제정 조례안은 마포농수산물시장을 운영함에 있어 특정한 세입을 특정한 세출에 충당함으로써 회계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시장의 안정적 운영에 기여하고자 특별 회계를 설치하기 위하여 제출된 의안입니다.

○ 구성 및 주요내용으로는

본 제정 조례안은 입법형식상 총 8개 조항과 부칙으로 구성 되었으며

안 제2조에는 적용범위를 마포농수산물시장에 국한하여 적용하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는 특별회계 세입의 범위를 “서울특별시 마포구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7조의 규정에 의해 위탁한 시장의 대행사업 수익과 일반 회계로부터의 전입금으로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는 세출의 범위를 마포농수산물시장의 관리수탁에 대한 사업비 및 인건비, 운영비, 예비비 등 기타로 규정하였고

안 제7조에는 잉여금의 처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매 회계연도 마다 세입총액이 세출총액의 10%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일반회계에 전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조례안 검토사항

본 제정 조례안은 마포농수산물시장을 운영함에 있어 특별회계를 설치하여 특정한 세입을 특정한 세출에 충당함으로써 회계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시장의 안정적 운영에 기여하고, 시장사업을 일반회계에서 분리함으로써 일반회계의 명목상 재정규모가 과다하게 확대되던 것을 방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이 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